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확대된 경제규모를 반영하여 보증 대상(신기술사업자) 범위를 개선하고 우수기술기업 및 민간투자 사각지대의 투자수요 충족을 위해 보증연계투자 한도 규제를 폐지하며,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여 처벌의 자의적 적용을 방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신기술사업자 범위 개선(안 제3조제2항)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자산총액 상한 기준을 확대된 경제 규모를 반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자산총액기준과 연동하여, 현행 1천억원 이하에서 5천억원 미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나목)으로 상향하고 상시근로자 기준은 삭제

나. 투자 한도 규제 폐지(안 제22조8제2항)

기업당 보증연계투자금액 한도 30억원 관련 단서조항(해당기업 보증 금액의 100분의 200 이내)을 삭제하여, 초기창업 및 비수도권 기업 등 민간투자 사각지대의 투자수요 충족

다.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2 제1호나목)

가중처분 적용(누적)차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권익위 개선안에 따라 누적 회차 적용기간 규정 신설)하여 국민권익 침해 방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현행	개정안
가. (생략)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서 신설> 다.라.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u>다만,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 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u> 다.라.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연락처	(044) 204 - 7703